<서식-3> 서약서(承诺书)

(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신청자에한함)

(仅限以境外完成疫苗接种资格申请免隔离人员填写)

본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本人以境外疫苗接种完成者**资格**申请免隔离确认书，**现确认并承诺如下：**

-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, 허위제출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취소되며, 형법(제137조, 제231조 및 제234조), 감염병예방법(제42조, 제47조 및 제49조)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출입국관리법(제11조, 46조)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.提交伪造、变造等疫苗接种证明，免隔离确认书效力将即时终止。根据《刑法》（第 137条、第 231条、第 234条）与《传染病预防法》（第 42 条、第 47 条、第 49 条），或根据《出入境管理法》（第 11 条、第 46 条）可不予入境或强制离境。
- 예방접종증명서가 위변조, 허위제출된 것으로 확인되고,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,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经确认提交的是伪造、变造等疫苗接种证明，如果最终检测出本人为新冠肺炎患者，并引起疫情传播，相关部门可向本人行使追偿权，本人须自负医疗费用并赔付被传染人医疗费用。

※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, 제3자(복지부, 질병관리청, 외교부 및 재외공관, 법무부, 국토부, 산업통상자원부, 경찰청, 보건소 및 의료원,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·의료기관 등) 제공에 동의합니다. (동의 □ 미동의 □)

根据《个人信息保护法》第15条和第17条，本人同意收集和使用个人信息，并同意向第三方机构(福祉部、疾病管理厅、外交部和驻外公馆、法务部、国土部、产业通商资源部、警察厅、保健所与医疗院、医院等与新冠防疫相关的公共行政、医疗机构等) 提供相关信息. (同意 □ 不同意□)

신청일(申请日) : 年 月 日

면제대상자(免隔离人) : (签 名 栏)

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 귀하